

콜롬비아 노동법 주요내용

·

목차

콜롬비아 노동법1) 주요내용

Ⅰ. 근로계약

Ⅱ. 임금

Ⅲ. 사회보장제도 Ⅳ. 사회보장급부 Ⅴ. 근로계약 해지

Ⅵ.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1) <http://www.secretariasenado.gov.co/senado/basedoc/codigo/codigo_sustantivo_trabajo_pr017.html>

Ⅰ. 근로계약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모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른다. 단 자유로운 전문직과 같은 민간계약 또는 상업적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예외로 한다.

2. 요건

통상 콜롬비아의 근로계약은 특정 형식이나 조건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콜롬비아 노동법(Codigo Sustantivo del Trabajo, CST과 그 개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 근로제공

2) 지속적인 근로관계, 근로 제공 시간이나 방식, 장소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명령 및 지시 권한을 부여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3) 근로에 대한 임금

3. 계약기간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은 4가지로 구분한다.

1) 기간을 정한 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근로관계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3) 특정 사업의 완료를 위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근로계 약

4)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실현기간 동안 유효한 근로계약

4. 수습기간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로 조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간. 이 기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전 통보가 없다 할 지라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배상 의 의무 또한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계약해지의 사유를 밝힐 의무 가 있다.

수습 기간은 2개월 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서는 수습 기간이 최초에 계약한 기간의 5분의 1일 초과 할 수 없다.

5. 근로시간

콜롬비아 노동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한다. 사회보호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하 루 12시간동안 근로할 수 있다. 지휘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동안 근로하기 위해 계약 시 상기 요건 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주간근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

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 한다.

업무가 지속되어야 할 경우,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교대근무를 선 택할 수 있다.

1) 주당 36시간 6일 근무, 6시간마다 교대, 야간이나 휴일 추가근무 없음

2) 주당 48시간 6일 유연근무, 매일 4 ~ 10시간 근무, 추가근무 수 당 없음

3) 매일 8시간 이상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간외수당 없음. 3주 간 평균 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함.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임금보다 3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통상주간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통상 주간근로 임금보다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 야간근로 임금보다 75%를 추가 로 지급해야 한다.

일요일 및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 주간근로 임금보다 75%를 추가 로 지급해야 한다.

Ⅱ.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급 부로서 현금 및 현물로 받는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두 종류로 구성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또는 통상 임금

2) 초과근무 수당, 특별상여금, 근로자의 숙식제공비 등

정부는 매년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2012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566,700 페소(US$323.4)이다.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

통상임금 외에, 계약당사자들은 통합임금방식으로 보수를 체결할 수 있다. 통합임금방식은 또 다른 임금 체결 방식으로써 통상임금과 그 외 추가적인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Ⅲ. 사회보장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이외에 일 반사회보장제도(el Sistema General de Seguridad Social)와 기타 정부기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사회보장제도(el Sistema General de Seguridad Social)는 보건

과 연금, 직업재해 등의 관리체계로서, 법률 제100호(1993년)와 그 개정법(법률 제797호와 제860호)의 공포로 수립되었다.

법률 제100호와 그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한다. 사회보장 분담금 지불을 위해 법에 따 라 정해진 근로자의 분담금을 임금에서 제한다.

직업재해보장 분담금 지불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임금에 대 한 직업재해보장 분담금의 비율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된다. 업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

2012년 현재 사회보장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사회보장제도** | **근로자** | **사용자** |
| **월 임금 비율** | **월 임금 비율** |
| **연금** | 4.25% | 12.75% |
| **의료보험** | 4% | 8.5% |
| **직업재해** | - | 0.375 ~ 8.7% |

이 외에, 사용자는 가족보조기금(la Caja de Compensacióon Familiar)과 직업교육서비스(el 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 SENA), 콜롬비아가족복지연구원(el Instituto Colombiano de Bienestar Familiar, ICBF)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각 4%, 2%, 3%를 납부해야 한다.

Ⅳ. 사회보장급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회보장급부와 휴가에 대한 근로

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1. 교통보조비

매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교통보조비를 정한다. 사용자는 현행 최저임금을 2차례 이상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해 야 한다. 2012년 현재 교통보조비는 67,800 페소(US$38.7)이다.

2. 복식 제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식을 제공한다. 연간 3차례(4월 30일, 8월 31일, 12월 20일) 시행하며, 현행최저임금을 2차례 이상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3. 퇴직수당

근로자의 면직 또는 실업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해지되면 근로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일은 매월 2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임금을 12개월로 나 누어 1년당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퇴직금에 대한 이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계산된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5. 상여금

사용자는 임금 외에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 은 근로자의 1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며 1년에 2회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6월 말일과 12월 20일).

6. 휴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에 15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가진 다. 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은 임금이나 사회보장급부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Ⅴ. 근로계약 해지

콜롬비아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절 한 사회보장급부와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보상금액은 근로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한다. 단 15일분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

1) 현행 법정최저임금의 10배 미만의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

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

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통상 임금 이외에 20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근무 최초의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임 금을 12개월로 나눠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2) 현행 법정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의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

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

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0일분의 통상 임금 이외에 15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근로 최초의 1년 이후부터는 매년 임 금을 12개월로 나눠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Ⅵ.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콜롬비아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 다. 노동법에 따라 2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 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 절차 개시 권한은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리이다. 노동 조합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통상 평균 2년으로, 교섭 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정해진다.

특정 사유로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단체협약은 6개월 동안 연장된다.